경영유의사항 등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인천)모아저축은행

2. 조치일 : 2025. 1. 3.

3. 조치내용

대상	내 용
기관	경영유의사항 3건, 개선사항 1건

4. 조치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가계신용대출에 관한 리스크관리 강화

상호저축은행은 채무자의 리스크특성, 재무상태, 미래 채무상환능력 등에 대한 철저한 신용리스크의 평가 및 분석을 통해 대출의 건전성 및 수익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고, 5백만원 이하의 개인신용대출에 한하여 소득증빙서류를 대체할 수 있음에도

2024.3월말 현재 높은 취약차주 비중 등의 영향으로 가계신용대출 연체율이 지속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고, 가계신용대출의 기존 차주에 대한 대출심사 및 위험관리 등에 활용되는 BS(Behavior Score) 평가모형의 경우, 모형의 안정성을 측정하는 지표 안정성이 상당히 떨어진 것은 물론, 다수의 특성항목에서 논리적 추세(Logical Trend)가 어긋나고 있어 모형의 변별력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이며,

소득증빙이 어려운 주부 등을 대상으로 대출을 취급하면서 5백만원 초과 대출 등에 대해서도 소득증빙 대체수단을 광범위하게 활용하고 있는바,

앞으로 가계신용대출 신용평가모형 리뉴얼 등을 통해 변별력과 안정성을 개선하고, 적격 소득증빙자료 등을 통해 차주의 실질적인 상환능력을 확인하는 등 가계신용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퇴직연금 편입 예금 관련 관리 강화

위험관리를 위해 특정 부분에의 과도한 위험 집중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험을 적절하게 분산하여야 함에도

2024.3월말 현재 모아저축은행의 수신총액 대비 퇴직연금의 집중도가 높고, 2024.9월의 퇴직연금 만기도래 금액이 2024년 하반기 퇴직연금 만기도래 금액의 59.7%를 차지하는 등 만기 쏠림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2024.6월말 기준 퇴직연금사업자 중 상위 3개 사업자 비중이 66.8%로 높아 특정 사업자에 대한 편중 현상도 발생하고 있는바,

앞으로 퇴직연금의 만기 쏠림을 완화하고, 분산된 기관별 취급 한도 마련 등을 통해 기관 편중도를 개선함으로써 유동성 관련 리스크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3) PF대출에 대한 심사 및 사후관리 강화

(가) PF대출 심사 강화 관련

상호저축은행은 중요사항이 변경되어 조건이 당초 승인내용보다 악화되는 경우에는 여신(심사)위원회 및 위험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득하여야 함에도

“중요사항이 변경되어 조건이 당초 승인내용 보다 악화되는 경우”를 제한하여 규정함으로써 그 이외의 경우에는 여신(심사)위원회 및 위험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득할 필요가 없도록 하고 있는바,

앞으로 “중요사항이 변경되어 조건이 당초 승인내용 보다 악화되는 경우”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운영함으로써 PF대출 조건변경에 대한 심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나) PF대출 사후관리 관련

① 부실 사업장에 대한 경·공매 강화

부실 PF대출 등은 6개월 이상 연체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경·공매를 실시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이를 유예할 수 있음에도

2024.6월말 현재 6개월 이상 연체 사업장임에도 부득이한 사유 없이 경·공매를 통해 처분하려는 노력이 미흡한 사례가 있는바,

앞으로 PF대출 부실 사업장에 대해 경·공매를 통해 처분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② 대출 사후관리카드 작성 불철저

PF대출 취급건별로 전담직원을 지정, 배치하고 사후관리카드를 작성하여 프로젝트의 인허가 진행상황, 분양현황, 공사진척도를 상시 모니터링하는 등 PF대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PF대출이 부실화되어 여신관리팀으로 이관 이후에는 사후관리카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내부 그룹웨어를 통해 별도의 양식 없이 담당자별 확인사항을 기록하고 있어 중요사항의 기재가 누락될 위험이 있는바,

앞으로 PF대출이 연체 및 사업장 부실화로 인해 여신관리팀으로 이관한 이후에도 사후관리카드를 작성하여 내부 그룹웨어에 첨부파일로 등록하는 등 사후관리카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나. 개선사항

(1) 여신 건전성 분류 프로세스 개선

상호저축은행은 보유자산에 대해 정기적으로 건전성을 분류하여 적정한 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유지하여야 하고, 여신 건전성 분류시에는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고 그 근거를 기록·유지해야 함에도

검사기준일(2024.3.31.) 현재 여신 건전성 분류를 하면서 각 부서단위로 수기로 수행함에 따라 폐업상태인 차주를 정상으로 분류하는 등 인적오류 사례가 발생되고 있는바,

앞으로 여신 건전성 분류시 차주의 각종 상환능력 변동정보의 조회 및 적용 과정을 전산화하고, 그 근거를 체계적으로 기록·유지함으로써 건전성 분류 업무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